

**[공정거래 자율준수(CP)
Check List]**

I. 공정거래 자율준수(CP) Check List

목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당사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의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을 점검

방법

해당 사업부 내 자율준수 담당자를 통한 자율점검

**점검
요령**

자율준수 담당자가 소속 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세부 위반 사항에 대해 그 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함

- - 점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 - 점검항목에 해당유무가 불명확한 경우
- X - 점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본 체크리스트는 공정거래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적인 업무상 흔히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규의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 자율준수 담당자는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써 성실히 임해야 한다.

1 하도급계약 체결단계

세부 체크 항목	○	×	△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를 별도 관리하고 있는지			
제조위탁 전에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하도급계약을 교부하고 있는지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고 있는지			
하도급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과 검사기준,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하도급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최저가 입찰금액 이하로 하도급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있지 않는지			

2 하도급계약 이행단계

세부 체크 항목	○	×	△
제조위탁 목적물의 사양, 구조, 디자인, 발주자의 요청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고 있는지			
계약기간 중 당초 체결된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변경된 경우가 있는지			
제조위탁한 물품에 대하여 위탁을 취하하거나 수령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있는지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반품한 경우가 있는지			
재계약시 전 계약금액 또는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있는지			
위탁한 목적물을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경우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지			

3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세부 체크 항목	○	×	△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 하도급대금 지급을 하는지			
하도급대금은 할인지급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대금지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하도급대금 지급 시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는지			

II. 금지행위 리스트

1 하도급법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① 하도급법 유의 및 금지사항

- ✓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
- ✓ 추가공사시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하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 ✓ 하도급관계 서류들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전자매체에 보관하는 것도 가능).
-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은 채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 지급되는 대가를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말아야 한다.
-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 ✓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미 발주한 물품에 대해서는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 ✓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지 말아야 한다.
- ✓ 검사물량이 많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검사에 10일을 경과하지 말아야 한다.
-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지 말아야 한다.

-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한 경우 이를 반품하지 말아야 한다.
-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품으로 판정하여 반품하지 말아야 한다.
-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한다.
- ✓ 하도급대금을 어음 대신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감액하지 말아야 한다.
-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한다.
-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한다.
-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말아야 한다.
- ✓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사전협의 없이 하도급대금에서 장비사용료를 공제하지 말아야 한다.
- ✓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일정한 금전 혹은 노동력의 제공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 ✓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 ✓ 수급사업자에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면서 금전·노동력의 제공을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
-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의 인사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대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 ✓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조치에 따라 행동한 후 이면합의 등을 통해 그러한 조치를 철회하지 말아야 한다(형사 고발될 수 있음).
- ✓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만기일이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경우 어음 할인료(연 7.5%)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관련 조항	체크 항목(위반유형)	방법
제3조 (서면 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는가? · 서면은 사전에 교부하였는가? · 교부한 서면에는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가? ·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은 교부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서의 계약내용을 검토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지 않았는가? · 수급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방법을 확인한 후 수의 계약인 경우 원도급의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검토 · 위탁 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견적 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검토 · 경쟁입찰인 경우 각 업체별 입찰 가격과 낙찰된 가격을 비교
제5조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구매를 강요하지 않았는지? 	
제6조 (선급금의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급금은 적정금액이 지급되었는지? · 지연 지급하지 않았는지? · 법정 지급기일 내에 지급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받은 선급금과 지급한 선급금 비교검토 ·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게 지급한 것은 아닌지 여부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확인
제11조 (부당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가? · 시공물량은 늘었으나 계약금액은 변경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계약 당시 정한 금액을 추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제12조 (물품 구매 대금 부당 결제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구매대금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자기로부터 구입하게 하였는지 여부와 실제투입한 물량 가액 이상으로 기성금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 확인

관련 조항	체크 항목(위반유형)	방법
제13조 (하도급 대금 지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지급기일을 지키고 있는지? ·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지? · 현금결제비율은 지키고 있는지? · 어음만기일 유지하고 있는지? · 지연이자는 지급하는지? · 어음 할인료는 지급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원장 · 어음대장 · 구매카드 등 약정서
제13조의2 (지급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하고 있는지? · 보증금액은 적정한지? ·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지? ·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증권을 받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자이행 및 계약이행증권 확인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변경 및 ESC와 관련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는지? · 계약금액 조정은 30일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 계약서상 불공정한 특약을 설정하지는 않았는지?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합의는 있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계약서상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대물변제한 것의 실제가치가 하도급대금에 상응하는지 여부 확인

2 하도급법상의 의무 및 금지행위

①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1) 서면교부

-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서면을 교부한 경우
- 발주처 통보 등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하도급 계약서는 적법한 서면 교부로 보지 않음
- 시공과정 중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용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 미교부에 해당

2) 서면 보존

-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지불 전의 관계서류(검수관계, 반품관계, 하도급대금의 결정)를 파기하는 경우
- 계약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파괴하는 경우

3) 선급금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법정기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 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어음 할인료 미지급

4) 검사의 기준 방법 · 시기

-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검사기준, 방법, 시기를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검사에 적용하는 것
- 검사기준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통상 적용되는 검사기준보다 매우 엄격하게 정해서 통상적으론 합격품으로 판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불량품의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의 지급을 과다하게 유보하는 경우

5) 하도급대금의 지급

-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검사종료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간주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월 1~2회 납품 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의 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잡는 경우

6)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

②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 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동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2) 물품 등의 구매강제

- 계약 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원사업자에게 고가의 부품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3) 부당한 수령 거부 및 수령증 교부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의 납품, 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정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 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공기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기 수령한 물품이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수령을 지연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 통보하는 것
- 발주자의 발주취소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4) 부당 반품

- 원사업자가 기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5) 부당 감액

-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 수량을 증가시키는 행위
- 하도급계약 후 추가 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원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 지속적인 발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키는 경우

3 업무 단계별 금지행위

① 구매/협력업체(거래처) 선정 및 단가 결정 단계

- 외주업체 선정 시 ‘품질 · 가격 · 서비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정행위
- 단가 결정시 협력업체와 합의하지 않는 행위
- 단가 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 단가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하는 행위
- 거래 기본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행위
- 계약서 작성시 양자가 기명 날인하지 않는 행위

② 구매/구매물량 발주 단계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고객(원발주자)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계약서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포함시키지 않는 행위
- 생산계획의 취소 등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주 취소 등을 하는 행위
- 거래계약서 없이 발주(주문)서를 발행하는 행위
- 다량발주를 약속하고 단가결정 후 일부만 발주하는 행위

③ 구매/위탁물 수령 및 검사 단계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수출물품인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협력업체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계약서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포함시키지 않는 행위
- 위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행위
- 당초 합의된 검사기준 및 방법보다 높은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하는 행위

④ 구매/대금지급 단계

- 추가발주 등의 금액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행위
- 경제상황 변동(물가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 행위
-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증가금액을 반영하지 않는 행위
-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고 어음 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행위
- 수출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비용(환차손, 외환수수료 등)을 협력업체와 합의 없이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행위
- 관세환급의 유무와 관계없이 협력업체에게 정해진 기일 내에 관세환급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계약체결시 계약서 등에게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금액을 대금지급시 부당하게 조정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거래대금을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60일)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일수에 대한 어음 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동시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거래 대금과 매출거래 대금을 임의로 상계 처리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자사 및 타회사의 물품으로 대금지급을 하는 행위
- 거래를 결정 후 협력업체와 대금지급 기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 행위

⑤ 회계처리

- 어음 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편법으로 회수를 요구하는 행위
- 자금의 조기집행을 명분으로 거래업체에게 부당한 거래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위탁물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발행하는 행위
- 대금지급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거래 성립 시 대금지급 기일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